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023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5. 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8. 한 재산세 36,710원의 부과처분 중 34,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10. 16. 한 재산세 326,490원의 부과처분 중 303,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원고의 주요 주주는 국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합계 9.48%)이다.

나. 원고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 외 12 필지의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여 왔는데, 피고는 구 [redacted]군 군세 감면조례(2012. 1. 25. [redacted]도 [redacted]군 조례 제20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redacted]군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redacted]군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1. 12. 31. 개정되어 2012. 2. 1. 시행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재산세를, 2013. 10.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각 감면하지 아니한 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3.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자치단체는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에 대한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 부처 협의 지체로 실제 납입이 지연되었을 뿐인 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다는 것을 반드시 설립 시 최초자본금 납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

2)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원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나 공사로서의 공익성 유지의 필요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추가로 적용받을 뿐인 점, 원고의 경우 주식 거래가 자유롭고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며 각 주주는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고 규정한 것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세액에 감면비율인 75%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 9.48%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4, 5조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원고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 이상으로 하고, 원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가가 인수할 부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고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부분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며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부분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조례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기 위함일 것인데,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인 점, ②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한국가스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사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국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던 1986년경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관회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원고의 지분 3.12%를 취득한 점, ④ 이와 같이 당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후 설립등기를 하였는지 그 전에 설립등기를 하였는지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에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입법 당시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충족하도록 한 자본금을 충족하여 설립한 후 설립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한 법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법인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 이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에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 2항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적용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같은 조 제3항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주주가 원고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사회가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등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처분금액의 100분의 75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인 9.48%를 곱한 금액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대상	처분액(원)	감면액(원)	정당한 세액(원) (처분액-감면액)
[redacted] 외 1건	36,710	2,610	34,100
[redacted] 외 12건	326,490	23,210	303,2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고진흥

판사 정유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관계 법령

■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2012. 1. 25. 충청남도 부여군 조례 제2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

제12조(투자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끝.